

2026년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성장단계별 기술지원 사업 공고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군산 소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하여 『2026년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 성장단계별 기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6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Pool을 활용한 특화분야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컨설팅 지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시험, 인증, 특허조사를 지원을 통한 특구기업의 체계적 성장 도모

□ 지원예산 : 250백만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소 2개월 ~ 최대 5개월(단, 사업기간 내)

□ 지원내용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 분	세부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 규모	예산
컨설팅	1. 단기컨설팅	기술, 기획, 경영, 판로개척 등	90천원 이내	250백만원
	2. 중기컨설팅	기업 중기컨설팅, 사업기획 등	3백만원 이내	
시험,인증, 특허조사 지원	1. 시험비 지원	성능평가용 시험비	3백만원 이내	
	2. 인증비 지원	국내외 인증 비용	10백만원 이내	
	3. 제품인증비 지원	제품 인증 비용	4백만원 이내	
	4. 특허조사비 지원	특허 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비 *출원번호통지서 함께 제출		

*출원비는 지원하지 않음 (조사비용의 견적만 가능하며, 출원 견적 불가함)

*중기컨설팅의 경우 기업은 사업단 방문하여, 컨설팅 필요성 사전 협의 필요

※ 2027년 1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2. 지원대상

① 신청기업 (수혜기업)

○ 군산시 소재 기업

- ※ 우대사항 : ① 군산강소특구 내 소재기업 ② 특화분야 기업(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융합산업)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② 특화지원기관 및 컨설턴트

- 특화지원기관 : 수혜기업(신청기업)에 성과물을 제공하는 기관
- 신청기업이 직접 선정하여 신청

[특화지원기관의 선정]

시험	군산시 소재 기관* 활용 우선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도내 소재 시험평가기관 ※ 필요시 전북도 외 시험기관 의뢰도 가능
인증	신청기업이 직접 선정하여 신청
특허조사	신청기업이 직접 선정한 특허법인* 활용 *대한변리사회에서 조회가 가능한 사업자

- 컨설턴트 : 수혜기업이 매칭 또는 특구에 요청하여 신청

[컨설턴트 자격 조건]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개인
전임교원이상	선임급 연구원 이상	경력 10년 이상	전문 경력 분야 10년 이상

< 지역 혁신기관 등 컨설팅 가능한 기관(예시) >

기술핵심기관(군산대) 및 군산강소특구 내 플라즈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호원대, 군장대 등 전라북도 내 대학, 기타 연구기관 및 컨설팅 전문기관 등 관련분야 기술경력자(개인)

※ 수혜기업의 컨설팅 전문가가 도내에 없을 경우, 도외 지역 전문가도 컨설팅 가능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관계자(교수 제외)는 컨설턴트로 지정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13호)의 제19조(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

- 수혜기업은 아래 “지원 제외 대상” 여부에 제한이 없어야 함

- 군산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지침에서 제한하는 대상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검토기준

○ 수혜기업

* (재무건전성 검토 기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구분	검토기준
사전 지원 제외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초과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법인설립 3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후 관리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컨설턴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3. 상세지원내용

① 컨설팅 지원

구 분	지원 규모	지원 기간	과제 달성목표
■ 단기 컨설팅 (기술, 기획, 경영, 판로개척 등) ※ 최소 3회 컨설팅	최대 900천원 23건 내외	2개월 내 수행	① 컨설팅(일지) 결과보고서
■ 중기 컨설팅* (사업기획 또는 국가과제 사업계획 컨설팅 등) ※ 최소 5회 컨설팅	최대 3백만원 10건 내외	3개월 내 수행	① 컨설팅(일지) 결과보고서 ② 사업기획보고서 또는 당해년도 국가과제 사업계획서 1부 제출 (공고문 유사중복성 검토 함께 제출) ※ ②번 서류는 30Page 이상
※ 컨설턴트는 아래의 제한조건에 준하여야 함. - 1인 기준, 컨설팅 최대 2건 지원 가능 (중기 컨설팅은 1건만 가능) - 컨설팅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최대 2건만 수행가능 ※ 컨설팅 전문기관은 사업자등록증 및 컨설턴트 명부 제출 필요			○ 컨설팅 지급 기준 - 15만원 / 1시간 ※ 1일 한도 : 60만원 이하 ※ 1회 : 2시간 이상 예) 단기: 2시간 이상, 3회 → 15만원×2시간×3회 = 90만원 중기: 4시간 이상, 5회 → 15만원×4시간×5회 = 300만원

※ 신청기업은 최대 2건까지 수혜 가능(단, 중기컨설팅은 1건만 가능)

* 중기컨설팅의 경우 기업은 사업단 방문하여, 컨설팅 필요성 사전 협의 필요

[컨설팅 세부 내용] (예시)

- 기 술 :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자문, 기업의 수요기술 관련 자문 등
- 기 획 : 강소특구 관련 사업신청을 위한 사업기획 지원
- 경 영 : 기업의 경영진단 및 개선을 위한 자문 활동
- 판로개척 : 기업의 기술개발 등의 성과물의 판로개척 자문 등

② 시험, 인증, 특허조사 지원

구 분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결과 제출서류
■ 시험평가 ■ 인증(일반)	최대 3백만원 (20건 내외)	4개월 내 수행 (단, 인증기관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 가능)	①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② 시험평가보고서
■ 제품인증	최대 10백만원 (10건 내외)		① 인증 결과보고서 ② 인증서(예: ISO, KS, KC 등)
■ 특허조사	4백만원 (10건 내외)		① 특허조사 결과보고서 ② 특허조사분석 보고서 ③ 출원번호 통지서

*출원비는 지원하지 않음 (조사비용의 견적만 가능하며, 출원 견적 불가함)

※ 시험, 인증, 특허조사 지원은 신청기업 당 최대 2건까지 수혜 가능

※ 동일 특허지원기관은 최대 2건까지 수행 가능(특허조사에 한함)

□ 기타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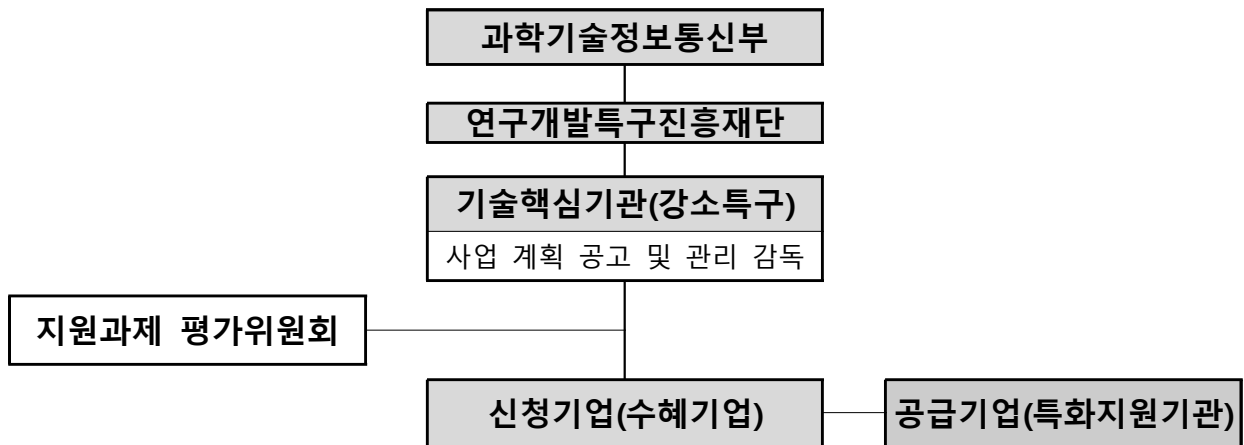
- 협약기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완수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 1달 이전에 담당자 연락
- 지원기간과 불문하여, 2027년 1월 31일까지는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 결과보고서의 부적합(작성 미흡, 신청 계획 불이행 등) 사항은 사업단 요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가 반복될 경우 차년도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함

□ 정부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 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 (기술료 징수 관련)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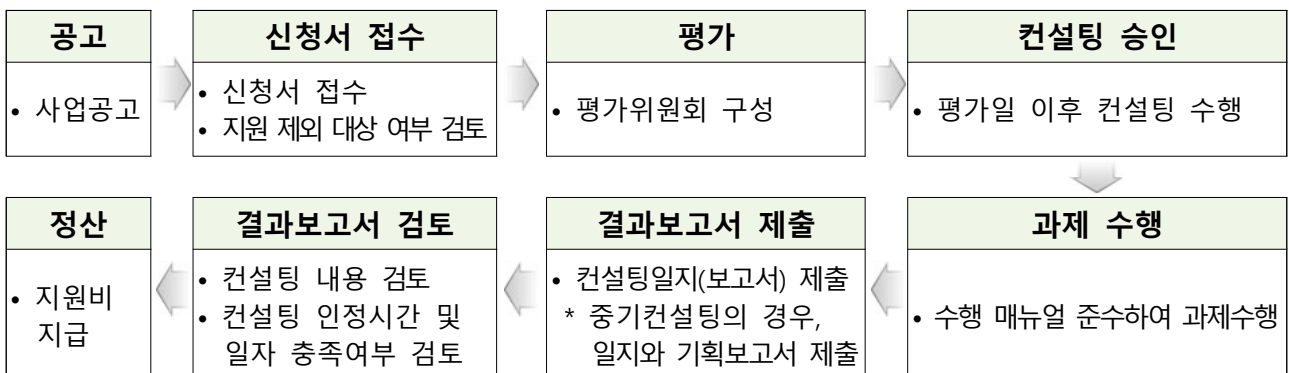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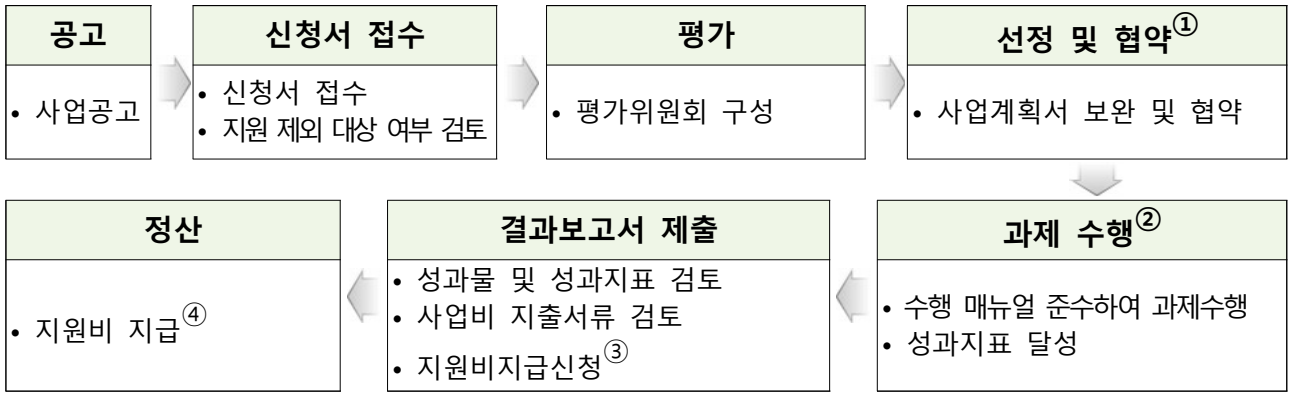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진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① 컨설팅 지원



② 시험, 인증, 특허조사 지원



① 협약 : 기술핵심기관-수혜기업 협약

※ 특허조사는 특허지원기관과 협약(수혜기업은 협약서 제출)

② 과제수행 : 수혜기업은 자비로 과제를 우선 수행(특허조사 제외)

③ 지원비지급신청 : 수혜기업은 기술핵심기관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지원비지급신청서 제출

④ 지원비지급 : 결과보고서 및 지급신청서류 승인 후 수혜기업으로 공급가액 송금

※ 특허조사는 특허지원기관로 공급가액 송금

□ 사업비 집행

① 컨설팅 지원

■ 컨설팅	① 과제 수행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② 제반서류 검토 후 컨설턴트에게 송금
-------	---

※ 기타소득으로 지급되며, 원천징수가 적용됨

② 시험, 인증, 특허조사 지원

■ 시험	① 수혜기업이 특허지원기관(시험평가기관)에 선지급(필요시) ② 사업기간 내 결과보고서, 지급신청서를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 제출
■ 인증	③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서류 검토 → 지출 승인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혜기업으로 지원비(공급가액) 지급
■ 특허조사	① 사업기간 내 결과보고서, 지급신청서를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 제출 ②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서류 검토 → 지출 승인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지원기관으로 지원비(공급가액) 지급 * (바우처 방식) 기술핵심기관이 특허지원기관으로 공급가액 지원 - 부가세는 수혜기업이 특허지원기관으로 지급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공급가액 지원)

□ 선정절차



5. 평가항목 및 관련 법규

□ 평가항목

① 컨설팅 지원

구 분	평가항목	비중
기업 컨설팅 필요성	•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 중요도	40
	• 컨설팅 지원의 적합성	
컨설턴트 적합성	• 컨설팅 분야의 컨설턴트 적합성	30
	• 컨설턴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컨설팅 계획 및 목표 적정성	
기대효과	• 컨설팅 결과의 실효성	30
	• 연계지원 방안 수립 가능성	
합 계 (%)		100

② 시험, 인증, 특허조사 지원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지원 필요성	• 지원목적과의 정합성	40
	•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 중요도	
수행 기관의 적합도	• 수행기관의 역량	30
기대효과	• 성과물의 활용도	30
	• 성과물의 사업화 연계성	
합 계 (%)		100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개발사업 자체기준

6. 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또는 12월 말일 까지 (상시접수)

※ 수혜기업(신청기업)과 특화지원기관은 매칭은 필수 조건임

※ 예산 조기소진 또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강소특구 홈페이지(kunsaninnopolis.com) 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

[절차] ① 군산강소특구 회원가입 : 기업별 1개 아이디

② 공지 · 공고 → 사업 신청(클릭) → 제출서류 업로드

* 관련 문의 : ☎(063)469-8939

□ 제출서류

※ 최종 선정 이후, 날인과 서명이 포함된 서류는 협약시 원본 제출 필수

순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고	제출항목	
				컨설팅	3종
1	[서식 1호] 신청서	원본 1부	수혜기업 날인	✓	✓
2	[서식 2호] 계획서	원본 1부	※ 컨설팅은 수혜기업이 계획서 함께 업로드	✓	✓
3	[서식 3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수혜기업/컨설팅/특허조사기관 제출	✓	✓
4	[서식 4호] 의무이행 서약서	원본 1부	수혜기업/컨설팅/특허조사기관 제출	✓	✓
5	[별첨서류] 컨설팅 경력 사항	원본 1부	컨설팅 날인 ※ 컨설팅 신청서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혜기업 제출(원본대조필) 수혜기업은 군산 소재 기업임이 증명되어야 함 *필요시 별도 서류 추가 제출 ※ 특허조사기관 함께 제출	✓	✓
7	공장등록증(해당시)	사본 1부	수혜기업 제출(원본대조필)	✓	✓
8	최근 3개년 재무제표(23, 24, 25년)	사본 1부	수혜기업 제출(원본대조필)	✗	✓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분	사본 1부	수혜기업 제출(원본대조필) ※ 특허조사기관 함께 제출	✓	✓
10	견적서	사본 1부	수혜기업 제출(원본대조필) ※ 컨설팅은 해당사항 없음	✗	✓

8. 기타 공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제출 서류의 의무이행 서약서에 명시된 대로, 관련 조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사업에 불이익이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아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수행기관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가능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신청 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요청시 수정 및 보완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2020.1.1.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은 제제조치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과제수행 기간도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처

기관명	전화/E-mail	주소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기업지원팀)	☎(063)-469-8939/ hk@kunsan.ac.kr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호